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29호로 2021년 4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

나. 구민의 의견 수렴 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신설(안 제15조제2항)

다.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6조~ 제18조)

라.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지원 등(안 제19조~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협 의 :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 : 2021. 4. 8. ~ 4. 13.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도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문화도시 사업에 관하여 살펴보면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의 분야별로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5년간 최대 200억원(국비 50:지방비 50)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로 우리 구를 포함한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유일함. 또한, 1년간의 예비도시 사업 추진 후 2021년 12월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바 1년간의 사업 추진 상황이 최종 지정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1차 문화 도시는 총 7곳이 지정되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는 총 5곳이 지정되어 있음.

※ 붙임1) 문화도시지정 사업 추진 자료 참고

- 현재 우리 구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비전으로 문화협치, 문화공유, 문화다양성, 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우리 구 자체의 다양한 물적·인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하고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는 문화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함.
- 안 제16조에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는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문화도시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위탁 시 재정지원의 근거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 도시의 지정을 위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려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최근 각 도시별 고유한 역사적·사회적 자산과 정체성에 따라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영등포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 예술 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함.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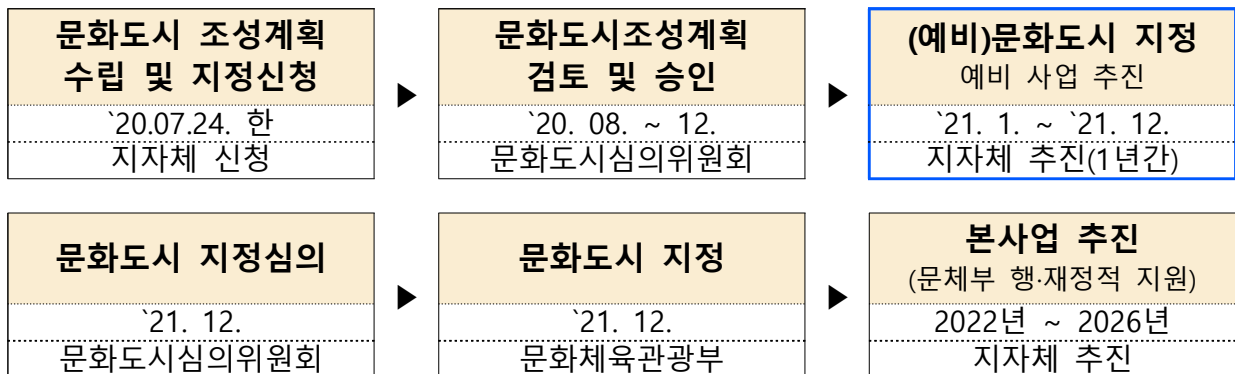
문화도시지정 사업추진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문화도시의 지정)
- 제3차 문화도시지정 공모안내(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1555, '20.04.21.)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0년 ~ 2026년
- 협력기관: 영등포문화재단
- 사업규모: 본사업 추진 시 5년 간 최대 2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절차



☐ 문화도시 지정현황

- **영등포구 3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공식발표: 12.24.(목))

	계획 제출	계획 승인	최종지정	비고
제1차	19개	10개	7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제2차	25개	10개	5개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제3차	41개	10개	미정	서울 영등포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대구 달성군, 경기 수원시,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칠곡군, 경남 밀양시

□ 추진계획

○ 영등포 문화도시 사업명

-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 2021년 예비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문화도시추진 준비 문화공론장	찾아가는인터뷰	- 영등포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주체(리더)를 면담, 대상자 활동 및 범위 기록 - 문화도시 사업 공유, 나의 문화도시, 지역 이슈 및 문제 등 의견수렴 및 발굴
	권역별공론장	- 문화도시 지정 전 준비단계로 권역별 시민리더 참여를 통해 지역 이슈(의제) 도출 - 통합공론장 예비 과정으로 소규모 공론장을 운영하고 의제 논의 방식의 경험 축적
	협력기관MOU	마을자치센터, 혁신교육센터, 도시재생센터 연계사업&전문인력 연계 협의
	문화도시포럼	문화도시 추진 선포, 문화도시 가치 및 사업, 지역 이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문화도시연구	문화도시조성계획 갱신 및 도시문화정책계획 수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성화사업	수변문화조성	수변탐사대 및 연구활동 프로젝트, 권역별 시민제안프로젝트 추진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혐오와 차별, 세대교류 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 추진
도시교류	도시교류사업	문화1호선 프로젝트, 강릉-포항 수변도시 공동 기획 사업 추진
영등포문화재단 사업 연계	프로그램사업	예술활동거점사업, 생활문화, N개의서울, 인문학, 청소년기후활동, 등 연계 추진
	공간운영	4개 도서관, 창의예술교육센터, 문화철도역 등 커뮤니티공간 연계 사업
	거점공간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
조례개정		영등포 문화도시 기본 조례 개정

참 고 자 료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시·도지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